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조계원 · 김우영
김남준 · 김기표 · 이정현
문금주 · 이광희 · 박상혁
윤종균 · 고민정 · 김 윤
황명선 · 김성희 · 문진석
이용우 · 임미애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,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 · 공포 · 약물 · 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

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
것임(안 제29조).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분류하고”를 “분류하되, 전체 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· 공포·약물·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고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상영등급분류) ① (생략)	제29조(상영등급분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다만,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,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--분류하되, 전체관람가 예고편 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 · 공포 · 약물 · 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 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고,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⑩ (생 략)	③ ~ ⑩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